

## 자산보관 ·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 
 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### 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 삼성 Kodex 15증권상장지주투자신탁[주식]
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 증권형 [주식] 집합투자기구
- 다. 보관 · 관리기간: 2009.09.24 - 2010.04.15 (상환)
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
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 대신증권, 대우증권, 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 SK증권

### 2.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09.11.06	제20조(기준 가격의 계산 및 공시)	① ~ ④ 생략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4조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1. 생략 2.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·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. ~ 6. 생략	① ~ ④ 생략 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54조에 의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1. 생략 2. 제2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·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. ~ 6. 생략
	제34조(투자 대상등)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3. 생략 4. 법 제246조제5항의 단서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생략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 1. ~ 3. 생략 4. 법 시행령 제268조제3항의 단서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생략

	제41조(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)	<p>① ~ ③ 생략</p> <p>④집합투자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분배함에 있어 해당 투자신탁분배금이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의 이 투자신탁이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금 전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, 이익분배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분배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익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, 이익금이 “零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.</p> <p>1. 법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</p> <p>2.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/p>	<p>① ~ ③ 생략</p> <p>④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, 이익금이 “零”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.</p>
--	-------------------	--	---

### 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-해당사항없음

### 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해당사항없음

### 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해당사항없음

### 6. 회계감사인의 선임 • 해임에 관한 사항

변경전				변경일	변경후			
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		회계 감사인명	계약 기간	감사 보수	계약 방법
안진회계법인	1년	55만원	서면계약	-	-	-	-	-

## 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
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
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
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
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 
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 
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
- 해당 사항 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 
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
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 
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 
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
## 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